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3호
2019. 1. 10.(목)

차 례

공 고(3)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공고 제2019-32호)1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공고 제2019-33호)2
- 조례의 제정 및 폐기 청구 주민총수 공표(공고 제2019-34호)4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46호)5

공 람									
--------	--	--	--	--	--	--	--	--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일: 2018. 12. 31. / 단위: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서명인 수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152,285	152,134	151	10,153

※ 투표청구 서명인 수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5 이상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 국 인 : 2018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대덕구청장

(기준일: 2018. 12. 31. / 단위: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1/3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52,267	22,841		
오 정 동	13,872		1,523	4개동 이상 (1/3이상의 동)에서 최소 서명인 수 이상 으로 서명을 받아 <u>총 서명인 수가</u> <u>22,841명 이상을</u> 받아야 함
대 화 동	6,944		1,042	
회 덕 동	12,822		1,523	
비 래 동	14,677		1,523	
송 촌 동	22,959		1,523	
중 리 동	17,821		1,523	
법 1 동	8,903		1,336	
법 2 동	14,647		1,523	
신 탄 진 동	10,157		1,523	
석 봉 동	11,411		1,523	
덕 압 동	12,308		1,523	
목 상 동	5,746		862	

▣ 대덕구의회 의원

(기준일: 2018. 12. 31. / 단위: 명)

선거구별	선거구역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	1/3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비 고
가 선거구	계	44,366	8,874		2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u>총 서명인 수가 8,874명</u> <u>이상을 받아야 함</u>
	오 정 동	13,872		444	
	대 화 동	6,944		444	
	법 1 동	8,903		444	
	법 2 동	14,647		444	
나 선거구	계	55,457	11,092		1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u>총 서명인 수가 11,092명</u> <u>이상을 받아야 함</u>
	비 래 동	14,677		555	
	송 촌 동	22,959		555	
	중 리 동	17,821		555	
다 선거구	계	52,444	10,489		2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u>총 서명인 수가 10,489명</u> <u>이상을 받아야 함</u>
	회 덕 동	12,822		525	
	신 탄 진 동	10,157		525	
	석 봉 동	11,411		525	
	덕 암 동	12,308		525	
	목 상 동	5,746		525	

※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와 외국인수를 합한 수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 국 인 : 2018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관련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일: 2018. 12. 31. / 단위: 명)

19세 이상 주민 총수			연서주민수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152,267	152,134	133	3,807

※ 연서 주민수 : 19세이상 주민 총수(C)의 1/40 이상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 국 인 : 2018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
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 2) 전 화 : 042-608-6043
- 3) F A X : 042-608-3811
- 4) E-mail : leeyongsim@korea.kr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건소장) (생 략) <u><신 설></u>	제10조(보건소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